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8월 22일

# 4. 근거법령

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

나. 약사법 제45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69조~71조, 제74조, 제76조,  
제 77조, 제80조, 제81조, 제98조

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0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6. 7일자로 약사법이 (법률 제 1078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1. 5. 6일자로 「약사법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관리업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것임

### <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별표에서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인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상위법인 「약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근거 법령 조문 정비

(2) 안 별표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별표5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관한 사무에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 2개 항목을 신설

(3) 안 별표에서 약사법 제45조제1항, 제5항, 제69조~제71조, 제74조, 제76-제77조, 제81조,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에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등 11개 항목을 신설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관리업무가 식약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